

- 0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해설 ②[○] 해당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에 해당한다.

▶ ②

- 0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⑤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해설 ③[×].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06.18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③

03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해설 ③[×]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9.12.10, 2007두20140).

▶ ③

04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 •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거 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②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③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해설 ④[○]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 •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④

05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 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 ②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 ③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 ④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⑤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해설

②[×]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주는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즉, 행정청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 무효인 기본행위가 치유되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87.8.18, 86누152 참조).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가 되고, 기본행위가 취소사유 있는 경우 인가는 일단 유효하고 기본행위가 취소되면 인가는 실효된다.

▶ ②

06 판례상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 ②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③ 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해설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 하자승계 부정

②[×] 재개발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하자승계 부정

③[○] 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하자승계 인정]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8.21.2007두13845).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하자승계 부정

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하자승계 부정

▶ ③

07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었는지를 판단한다.
- ②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 ④ 형량명령이론은 계획재량의 통제와 관련이 깊다.
- ⑤ 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를 재량의 일탈이라 한다.

해설 ① [×]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2001.2.9, 98두17593). 2004.4.29, 2003헌마814).

▶ ①

08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②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 ③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④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형벌규정의 위임은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등을 명확히 규정 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해설

④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이위임금지(履委任禁止)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6.4.14, 2004두14793 ; 헌재 1996.2.29, 94헌마213).

▶ ④

09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④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해설

④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구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④

10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⑤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설 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부기의 예외): i)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ii)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iii)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 ①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한다.
- ② 정보공개 청구권은 해당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③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 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각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3호) 2013년 전문개정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제5조 제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7조 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⑤[○] 제19조 제1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제2항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12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②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이어야 한다.
- ③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
- ④ 의무의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⑤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해설

①②③④[○] ⑤[×] 대집행의 요건으로는 i)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ii) 다른 수단으로써 불이행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보충성), iii) 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등이 있다..

▶ ⑤

13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 ①[×]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적, 보조적 수단이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3항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1항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2항 비례의 원칙
- 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①

14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 ③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 할 수 있다.
- ④ 무허가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해설

- ①[○]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의 부과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이다.
- ②[○]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 ③[○]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본문).

④[○] 「건축법」 제10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⑤[×] 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다투도록 하였다. 이에 구 건축법하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쟁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 ⑤

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④ 「국가배상법」 제 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 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해설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1.1.27. 2008다30703 등).

▶ ②

16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 제 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 ③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④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해설

③[×]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은 피침해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

▶ ③

17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④ 서울특별시장
- ⑤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기관]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개정 2012.2.17>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①

18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 ②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 ④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 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 ② [×]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두는 대신 의무이행심판을 두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②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이 계속 되고 있을 것
- ② 1심법원의 판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해설 행정소송법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 ②

20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 ① 원자로 시설부지인근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 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 ③ 1일 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안의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 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 ⑤ 담배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담배구내소매인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해설

⑤ [×]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보고,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소매인의 입장에서 구내소매인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4.10, 2008두402).

▶ ⑤